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지만,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 4. 신구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1.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경상북도 재정과-15625(2004.12.22)】 1부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송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구 대 비 표

【영주시 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신 설>	<p><u>제15조의4(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u>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p> <p><u>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u></p>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2834(2004.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도록 하였음.
3. 그러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  
1부. 끝.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군(세정과)

★지방행정주사 전강원 지방행정사무관 배병국 재경과장 12/22  
박현규

협조자 지방세우주사보 배경철 지방행정주사 최현찬

시행 재정과-15625 ( 2004.12.22. ) 접수 세무과-8998 ( 2004.12.23.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311 / 전송 (053)950-2319 / [jungw@gb.go.kr](mailto:jungw@gb.go.kr) / 공개

## 시 · 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도○○시 · 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안)

법령	개정안
<신 설>	<p><u>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u>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p> <p><u>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담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 지방세법

第196條의5 (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 1. 乗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 稅額으로 한다.

營業用		非營業	
排氣量	시시當 稅額	排氣量	시시當 稅額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乗用自動車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 $2 \leq n \leq 12$ )

### 2. 기타 乗用自動車 (생략)

### 3. 乗用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구 분	營業用	非營業用
高速 버스	100,000원	-
大型專賣버스	70,000원	-
小型專賣버스	50,000원	-
大型一般버스	42,000원	115,000원
小型一般버스	25,000원	65,000원

附則 <제6060호, 1999.12.28>

第5條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乗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 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乗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自動車(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规定에 의하여 이미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税 및 自動車稅는 제132조의2 및 第196條의5第1項의 规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號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规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月 1일부터 2004年 12月 31일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2. 2005年 1月 1일부터 12月 31일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일부터 12月 31일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税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